

# 직접구매자 재정보증금 납부 안내

'25.04.29. 시장정산팀

## 1. 재정보증 대상 및 방법

- (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4.1조
- (대상) 전력거래 정산대금,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 등 3가지 각 정산대금에 대한 재정보증 필요
  - 단, 3가지 각 정산대금에 대한 직접구매자 제출 자료는 동일하므로 자료 제출 이후 전력거래소에서 각 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 (방법) 현금 및 비현금(보증보험 등)

## 2. 재정보증기간('25년 최초시행, 3년 기준, 총 3회)

- (1차년도) '25년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 (2차년도) '26년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 (3차년도) '27년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 3. 전력거래 정산대금 재정보증금액 산정 방법

- (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4.3조
- (산정방법) 재정보증금액 =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 ÷ 해당월일수 × 80일
  - \* 아래 ①~③ 각 거래월별 값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적용
  - ① 거래기간이 속한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 또는 다음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한 값
  - ② 재정보증금액 통지기한 이전까지 거래월별 결제가 종료된 최근 12개월의 월별 결제금액
  - ③ 거래개시 직전연도의 월별 전력사용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한 값

## 4. 재정보증금액 관련 자료 제출

- (규정) 시장운영규칙 제3.4.2조 제2항
- (기한) 최초는 거래개시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며, 거래 이후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

→ **(통지)**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보증금액을 산정하여 거래개시 희망일 20일 전까지 통지함

□ **(자료)** 신규참여 및 기존참여는 아래 ①, ②를 모두 제출

○ **(신규참여①)** 거래개시 직전연도의 월별 전력사용량 및 증빙

- (한전수전 有) 한전 수전량 제출

- (한전수전 無) 제출자료 불요

○ **(기존참여①)** 거래개시 직전연도 전력시장에서 구입한 월별 전력 사용량 및 증빙. ※ 현재 기존참여는 없음

○ **(공통제출②)** 거래기간이 속한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

※ 전력거래소는 ①, ② 자료의 값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적용

## 5. 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 **(규정)** 시장운영규칙 제3.4.4조

□ **(납부)** 거래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 **(검증)** 전력거래소는 전력구매자가 제공한 재정보증이 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전력구매자와의 전력 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6. 재정보증의 해지

□ **(규정)** 시장운영규칙 제3.4.6조

□ **(해지)** 직접구매자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전력거래가 해지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해지

붙임 :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발췌 내용

[붙임]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발췌 내용

제4절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절명칭개정 2005.1.21., 2021.1.1.>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전력구매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단,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 기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채권 또는 기업신용등급에 대해 최우수등급(AAA)을 받은 자는 재정보증을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 최우수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5.3.17., 2021.1.1., 2025.4.9.>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AAA	AAA	AAA

1.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및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개정 2019.12.31., 2021.7.1., 2024.8.1.> [시행 2022.1.1.]
2. <삭제 2019.12.31.> [시행 2022.1.1.]
3.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신설 2021.7.1.]
4. 전력거래대금 중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신설 2024.8.1.]

② 제 1항의 각 재정보증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15.3.17.]

1. 현금 재정보증

2. 비현금 재정보증 <개정 2005.1.21.>

③ 현금 재정보증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 개설된 해당 전력구매자의 보증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번호 변경 2015.3.17.> <개정 2021.1.1.>

1. 전력거래대금 지급만을 위한 재정보증일 것
2. 전력거래대금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전력거래소가 전력구매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을 것
3. 전력거래소의 동의없이 전력구매자가 보증금을 인출할 수 없을 것 <개정 2005.1.21., 2021.1.1.>

④ 비현금 재정보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15.3.17.>

1. 적정자격을 가진 재정보증제공자로부터의 재정보증이며, 재정보증제공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의 신용관리하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한함
2.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형식의 보증서 또는 은행신용장

⑤ 제1항 1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4.30.]<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15.3.17.]

⑥ 제1항 제3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의무이행년도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7.1.> [시행 2022.1.1.]

⑦ 제1항 제4호의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요반응자원거래에 대한

최초 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8.1.]

⑧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정보증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변경 2024.8.1.>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지정 고시'로 갈음한다.
2. 신용평가등급이 최우수등급인 회원사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의견서를 전력거래개시 시작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사의 의견서는 제출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1.1.1.]

⑨ 제1항 단서에 의해 재정보증 면제를 받은 자가 전력거래 기간 중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경우 해당 회원사는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대금 등에 대한 재정보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 <항번호 변경 2024.8.1.>

**제3.4.2조(관련자료 제출)** ① 전력구매자는 다음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3.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거래기간의 월별 예상구매량을 거래개시 1개월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1., 2013.4.30., 2021.1.1>

② 전력구매자로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개시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0., 2021.1.1>

1. **거래개시 직전연도의 월별 전력사용량 및 증빙**<개정 2013.4.30.>
2. <삭제 2013.4.30.>
3. **거래기간이 속한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개정 2013.4.30.>
4.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공급예정구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허가증 사본[신설 2010.11.30]
- ③ <삭제 2010.11.30>
- ④ <삭제 2013.4.30.>
- ⑤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월별 예상구매량은 전력시장에서의 월별 구매전력량에서 해당 월의 판매전력량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신설 2013.4.30.]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금액은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3.17.] <개정 2019.12.31., 2021.7.1., 2024.8.1.> [시행 2022.1.1.]

1.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및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2. <삭제>
3. 전력거래대금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4. 전력거래대금 중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신설 2024.8.1.]

②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전력구매자별로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일평균 구매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재정보증금액 =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 / 해당월일수 × 기준일수**

1. 구역전기사업자의 기준일수는 전력구매일정과 거래정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40일 적용
2. **직접구매자의 기준일수는 전력구매일정과 거래정지 및 전기공급 중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80일 적용** <개정 2010.11.30., 2013.4.30.>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15.3.17.> <개정 2019.12.31., 2024.8.1., 2025.4.9.> [시행 2022.1.1.]

③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거래월별 값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으로 한다. 단,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이 0원보다 적으면 0원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3.4.30.>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15.3.17.> <개정 2019.12.31.> [시행 2022.1.1.]

1. 제3.4.2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월별 예상구매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한 값 <개정 2013.4.30.>
2. 재정보증금액 통지기한 이전까지 거래월별 결제가 종료된 최근 12개월의 월별 결제금액 <개정 2013.4.30.>
3. 제3.4.2조 제2항 제1호의 월별 전력사용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한 값 [신설 2013.4.30.]

④ 제1항 제3호의 금액은 총 의무이행비용,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량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정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7.1.> [시행 2022.1.1.]

1. <삭 제>
2.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금액 =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합계 ×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비율 ÷ 전전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 × Max(전년도 전력구매비율, 당해연도 예상 전력구매비율) <개정 2021.7.1.>

⑤ 제1항 제4호의 금액은 전력구매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전기사업자의 재정보증 금액은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으로 한다.
2. 직접구매자의 재정보증 금액은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에 90분의 130을 곱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24.8.1.] <개정 2025.4.9.>

⑥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은 다음 각호의 분기별 값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으로 한다. 다만, 제7항의 통지 기한까지 전년도 4분기 전력거래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4분기 전력거래대금으로 대체한다. [신설 2024.8.1.]

1.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분기별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
2. 전년도 분기별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의 합계 × 해당 사업자의 예상 전력구매비율

⑦ 전력거래소는 제2항에 의해 설정된 재정보증금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변경 2010.11.30.> <개정 2013.4.30.>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15.3.17.> <개정 2019.12.31.> <항번호변경 2024.8.1.> [시행 2022.1.1.]

1. 전력구매자에게는 매년 12월 10일 이전까지 통지한다. 단, 제3.3.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거래기간의 거래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개정 2013.4.30., 2021.1.1.>
2. 직접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는 거래개시 희망일 20일전까지.<개정 2005.1.21.>

**제3.4.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① 전력구매자는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재정보증금액을 제3.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현금의 형태로 매년 12월 24일까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3.3.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거래기간의 거래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5.1.21., 2013.4.30., 2021.1.1>

② 직접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재정보증금액을 제3.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현금의 형태로 거래개시 희망일 7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

③ 전력거래소는 전력구매자가 제공한 재정보증이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력구매자와의 전력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21.1.1>